



공정사회 구현 및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
청렴 의무 수행 교육자료

2023.01.26.(목)

청렴의 의미

‘청렴(淸廉)’의 사전적 의미는 ‘맑을 청(淸), 깨끗할 려(廉)’ 두 글자로 이루어진 ‘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, 탐욕이 없음’을 의미하는 명사로 강직, 청렴결백, 결백, 청백 등과 유사하게 사용되며 혼탁, 부정 등과 반대 의미로 사용됩니다.

① 청소년행복재단 5대 의무 사항

1 친절·공정의 의무 (복무규정 제5조)

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·사를 분별하고 친·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※ 시민이 선출한 도의원·시의원 등이 공무로 방문시 인사, 응대 등 잘하기

위반유형

- 외부 손님 또는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불친절한 응대(인사, 대접 등)
- 부정 청탁 및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
2 책임·성실(직무완수의 의무) (복무규정 제3조)

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, 정관 기타 제규정과 직무상 지시를 준수하여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.

위반유형

- 소극행정
-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
-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

3 기밀엄수의 의무 (복무규정 제6조)

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반유형

-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
- 비공개 자료 등 중요 공문서 무단유출
-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
-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

4 청렴의 의무 (복무규정 제7조)

직원은 항상 청렴결백하여야 하며, 직무와 관련하여 직·간접적으로 사례·증여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위반유형

- 직무 관련 또는 관계가 없더라도 사례·증여, 향응 등 받은 경우
- 부정 청탁 및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
5 품위유지의무 (복무규정 제8조)

직원은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존중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반유형

-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불건전한 이성교제, 도박, 폭행, 사기, 마약투여 등
- 부정 청탁 및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- 갑질행위 금지

② 청소년행복재단 4대 금지 사항

1 직장이탈 금지 (복무규정 제4조)

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.

위반유형

-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
- 무단결근
- 무단 지각, 외출 등의 행위

2 겸직 금지 (복무규정 제9조)

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.

위반유형

- 상업·공업·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

3 집단행위금지 (복무규정 제10조)

직원은 재단의 이익에 위배되는 집단행위 또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반유형

-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

4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(취업규정 제13조)

취업규정 제41조~48조 참조

위반유형

- 취업규정 제42조 1호~ 10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